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 흠 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성흠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  
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합니다. 병무청은 각 가문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5~6월경 시상식 개최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 병역명문가는 '04년~'20년까지 전국적으로 6,395가문이 선정됐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1,198가문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병무청 주관으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추진돼 왔고 서울시 역시 2015년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못한 채 선언적 규정에 그쳐 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우대)에 따라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무료관

람)에 따른 무료관람 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역명문가 사람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